

##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의 현안 문제점 및 발전방향

Current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Reinforced Concrete Works



김학규\*  
Hak-Kyu Kim



길영국\*\*  
Young-Kug Kil



이보라\*\*\*  
Bo-Ra Lee



김은미\*\*\*\*  
Eun-Mi Kim

### 1. 서 론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과 고층화시대의 영향과 해외건설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단종 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업계의 풍토와 도급질서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1974년 5월 건설업 정상화 10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상기의 일환으로 1975년 12월 단종 공사업 면허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77년 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단종회원 전국협의회가 발족되었다.

1981년 12월에는 단종 공사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2년 7월 건설업법시행령 10차 개정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개칭되었고, 1985년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가 창립되어 같은 해 12월 초대 위원장으로 배용수 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창단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는 제 9대 회장으로 김학규 회장이 2009년 11월에 취임하여 건설 산업의 개방화 시대에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고기술개발과 시공능력향상 및 진흥방안을 검토 및 연구하는 등 건설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는 각 시도회에 16개 운영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기술진흥과 회원봉사 등에 집행하고 있다.

2008년도 기성실적은 13,325,819백만 원으로 전체 전문건설업종 총 기성액 63,409,382백만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상기 전문건설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근콘크

리트공사업종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분석 보고서(2009년 3월)'를 참조하여 과당경쟁질서, 하도급 실태, 건설인력관리 실태, 입찰계약제도운용, 건설 생산체계 개편문제 등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 2.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의 현안

#### 2.1 과당경쟁질서 개선문제

전문건설업체 수는 2008년말 기준 46,149개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고, 전체 공사계약 건수는 602,184건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하고, 공사수주 계약액은 723,191억 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1건당 공사금액은 120백만 원으로 전년도 117백만 원에 비해 2.6% 증가하였고, 전문건설업체당 공사금액은 1,567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 증가하여 전년대비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1건 공사 수주에 참여한 업체수를 비교하면 일반경쟁입찰시 공공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평균 293개 정도로 전년도의 378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민간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17개 정도로 전년도의 70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경쟁양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도급시장과 달리 하도급시장은 1건 공공 및 민간 하도급공사의 수주입찰에 평균 26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 전년도 22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응찰하는 것에 비해 평균 4개 업체가 증가하여 하도급 시장의 경쟁은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도급공사의 저가투찰행위 요인으로 응답업체 80.9%가 과당경쟁질서와 최소한의 고정비 확보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계는 과당경쟁 질서속에서 기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고정비 확보를 위하여 저가투찰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저가투찰로 수주한 전문공사의 결손보전방법은 조사응답 업체의 77.4%

\* 정회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 회장  
hyup145@shimbiro.com

\*\* 정회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회 사무국장

\*\*\*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

가 공기 단축과 설계 변경,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해 무리한 공기 단축과 건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설계변경과 자재비 절감을 위해 부적격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공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조사결과 2008년도 전문건설업체간 경쟁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업체간 과당경쟁속에서 공사 채산성의 확보를 위한 저가투찰을 막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질서 완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제한제도를 들 수 있는데 현행 지역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응답 업체의 30.1%는 업종 특성별 제한기준의 차등화, 20.7%는 제한기준금액의 상향, 8.7%는 행정구역단위로 제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응답 업체의 63%가 현행 지역제한제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체는 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간의 과당경쟁뿐 아니라 일반건설과 전문건설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한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적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의 근원인 업체수 난립현상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급공사 발주물량의 확대로 전문공사의 물량공급을 늘리는 등 건설물량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2 자금사정과 어음결제 문제

전문건설업체의 2008년도 자금사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8.4%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7%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한편 자금사정 호전요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년도마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역시 공사수주량의 감소와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8년은 세계경제의 금융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경제성장 둔화국면에 진입한 경기 침체가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과 맞물려 국내의 물가 상승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건설투자의 침체가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경기 상황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2008년 전문건설업체가 체감하는 호전국면의 자금 사정은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공사의 대금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원도급은 86.5%, 하도급은 66.0%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전년대비 원도급 공사의 경우 3.8% 증가하였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3.4% 증가하여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에 있어 현금비중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 발주자의 안정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소규모의 공사를 많이 수행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 받는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어음결제의 비중은 원도급 공사의 8.9%, 하도급 공사의 23.9%인 것으로 조사되어 하도급공사의 경우 어음결제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음지급일이 30일 ~ 120일 이하인 경우 원도급공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의 어음 만기일은 전반적으로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도급공사에 비해 하도급공사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장기어음 결제로 기업자금 회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자금악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사대금 현금지급 비율의 상향조정, 금융권의 대출확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 확대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견 중 건설업계의 인식변화 및 정부방침에 힘입어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에 관한 사항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 확대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전문건설업체의 영세성과 대규모 차입금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금융권에서 필수적인 자금투자의 안정성 검토 측면과 부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확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2.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운용실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조사결과 상당수의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직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수급인과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것(56.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불 신청절차를 밟고 싶어도 수급인의 향후 압력(18.7%)이나 발주자의 직불신청 거절 가능성(11.0%) 등 타의에 의한 이유로도 직접지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자세히 모른다는 의견(9.4%)도 조사되어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는 각각 원·하도급간 계약이 신의성실의 관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은 공공 공사 31.4%, 민간공사 36.0%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발주공사와 같은 공공 공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급보증서 교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하수급인은 입찰시 계약이행보증과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서제도를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사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공사비를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43.8%)를 차지하고 있다.

## 2.4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

하도급거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관계는 경제력, 회사 규모, 시장 지배력 등의 차이로 종속관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간 협력업체 하도급 계열화의 지속 및 원·하도급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추후 공사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여러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인은 최저입찰제로 선정되는 낮은 하도급 입찰가를 은폐하거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특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과정 전과정에 걸쳐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싼 책임소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은 건설생산 활동을 규정하는 여타 제도, 건설 경기, 건설업체의 수, 건설업 관행, 건설업체 종사자의 의식 및 행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 어느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해소되지 않는바 하도급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의 총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5 현장 인력관리실태

전문건설업체당 상시 종사자수는 평균 11.7명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이 40.1명, 중규모 기업이 13.2명, 소규모 기업이 7.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사무직 종사자수는 평균 3.4명, 기술직 종사자수는 8.0명으로 기술직 종사자수가 2.3배 정도 많다. 상시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사무직의 경우 4.3년, 기술직의 경우 4.6년으로 사무직보다 기술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시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근속기간이 근소하게 증가하여 인력수급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주력하는 전문건설업에서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숙련된 기술기능 인력의 조달과 관리가 공사수주와 함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원도급공사라고 해도 종합건설업과는 달리 건설공사의 계획·조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결국 전문공사의 현장관리에서는 직접 시공업부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수급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전문건설업에 있어서 적절한 기술·기능 인력의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계 기술자격인력과 비자격 숙련기능공의 수급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46.5세이며,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숙련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 인력을 인정기능사로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현장상황을 반영한 인정기능사제도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등록 유지 및 공사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력수급과 운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기능 인력이 인정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능력 인정에 대한 자신감 및 자부심과 현장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등 기능 인력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정기능사제도의 폐지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국가 기술자격으로 대체되었을 경우, 평균 기능 인력의 나이가 5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유자격자의 기능 인력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능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이러한 인정기능사제도의 폐지에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철근콘크리트 업종의 경우 공정별로 현장에 40%~70%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 건설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6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수의계약 제도 실태

적격심사낙찰제도는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입찰가격과 공사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격심사제의 적격심사 항목에서 다수 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공사 수행 능력 평가라는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제비뽑기식의 낙찰자

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조사결과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의 입찰계약 제도로서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시행을 원하는 업체가 50.6%, 적격심사낙찰제의 적격심사 기준상 내용을 조정해야한다는 업체비율이 36.0%로 나타났다.

한편 적격심사기준 내용을 일부 조정하거나 최저가낙찰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사의 시공능력보다는 가장 낮은 공사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방식으로 현재 3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에 반해 응답 업체의 47.9%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응답 업체의 13.3%는 적용공사 규모의 축소를 원하고 있는 등 61.2%가 최저가 낙찰제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인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를 하도급 수준한 경우, 하도급 낙찰률은 평균 66.2%로 조사되었다. 전문건설업계의 주된 하도급공사 낙찰방식의 하나인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당 평균 5.3회의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4.5회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의계약시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의시담 46.0%, 전자입찰 27.8%, 견적입찰 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2.7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운영실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하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계획, 관리, 조정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하도급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고 전문건설업자의 지위가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로 격상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되므로 저가하도급, 하도급대금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관련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부조리의 척결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들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하도급공사의 적정 공사비의 확보(40.0%),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불법정거래의 해소(28.4%) 및 하수급인의 지위 향상(19.5%), 부실공사 방지(14.7%) 등을 꼽고 있다.

## 2.8 건설생산체계 개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 등 30년간 유지되어온 건설생산 조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건설시장이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한 의견으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3.6%로 조사되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영업범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의 경쟁 구도가 보다 치열할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영업범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는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자의 수직적 관계의 해소와 각종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4.7%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라 시공참여자와 소속 근로자의 관리에 따른 기능 인력의 활용을 통해 생산조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45%가 기능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시공참여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업체가 26.1%,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 직접 고용과 시공참여자제도를 유지한다는 업체가 24.6%로 아직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과도기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능 인력의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30.9%, 직접 고용시 작업 능력의 저하가 17.3%, 공사 원가가 상승한다는 응답이 16.5%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공참여제도의 부활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도급금액 30억 미만의 공사에 한해 건설공사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접시공제도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43.5%의 응답업체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다. 직접시공의무제도 폐지 및 공사범위 축소의 이유로는 일률적으로 직접시공방식을 정하는 것보다 건설업자가 현장 사정에 따라 하도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 전문건설의 입지가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4%이며,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업자의 위장직역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14.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유발된다는 의

건이 14.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부실업체의 정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급인의 직접 시공으로 전문건설업의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의 발전방안

전문건설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의 현안 분석으로부터 얻은 우선적 해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과당경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체 난립상을 완화해야 한다. 과다경쟁의 근원인 업체수의 난립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급공사 물량 확대,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모색으로 전문공사의 물량공급을 늘리는 등 건설물량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2) 기업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제도와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금약화현상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법령으로 보장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제도를 잘 운용하고, 선급금과 기성금 수령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3)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 일이다. 또한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대로 공사를 이행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하수급인 보호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전근대적인 이종계약과 위장하도급 행태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형 도급방식인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상생협력, 대등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전반의 체제 정비와 지속적인 협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4)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체제의 확립이다. 인정기능사제도를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공급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단순 일용업무가 주를 이루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좀 더 숙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계 기술자격자의 유입을 통해 전문건설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5)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겸업

제한 폐지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시장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건설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6) 시공부문의 하자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하도급의 수직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하자책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7) 총 공사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공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 등 시공기술연구가 시급하다.
- (8)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생산체계의 개편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다음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지침 및 매뉴얼 등의 시방서를 제정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해외공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해외공사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듈화 및 규격화된 자체코드 개발이 필요하다.

### 4. 결론

본 기사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기술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생산체계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단한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제도개선 및 시공기술정보를 끊임없이 입수하고 시공 전문성의 강화를 통해 종합건설업과 대등한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가 확산 될 때 전문건설업은 건설 산업의 양대 축의 하나로 그 기능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9.

담당 편집위원 :  
권기주(한국전력공사) [kyeunkjoo@kepco.co.kr](mailto:kyeunkjoo@kepco.co.kr)